
국립산림치유원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2020. 5



I. 계획의 개요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지역개발사업 준공(경상북도 공고 제 2019-8호, 2019.01.07.) 후 국립산림치유원 운영중 발생한 건축물 용도 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건축물 용도를 현실화 하고 토지이용의 합리화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계획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위치 : 경북 영주시 봉현면 두산리, 예천군 효자면 고향리 일원
- 면적 : 1,422,346.4m² (영주시 699,929.4m², 예천군 722,417.0m²)

■ 시간적 · 내용적 범위

- 과업기간 : 2020. 03. ~ 2020. 07. (4개월)
- 과업내용 :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행정절차 이행



3 추진경위

- 2010. 12. : 기본계획(변경) 수립
- 2011. 04. 19. : 백두대간권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및 종합발전계획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1-146호)
- 2011. 12. 27. : 백두대간권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1차) 지정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1-819호)

- 2012. 03. 26. : 백두대간권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1차) 실시계획 승인
(경상북도 고시 제2012-95호)
- 2015. 10. 29. : 국립산림치유원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변경)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15-352호) ※ 시도2호선 우회도로개설 및 추가부지 확보
- 2016. 03. 14. : 국립산림치유원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변경)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16-66호) ※ 치유문화센터 신규 건립
- 2017. 12. 21. : 지역개발계획, 사업구역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변경)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17-382호) ※ 사업기간 연장
- 2018. 06. 04. : 국립산림치유원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변경)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18-170호) ※ 확정측량 성과 결과반영
- 2019. 01. 07. : 국립산림치유원 조성사업 공사완료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19-8호)

II. 관련법률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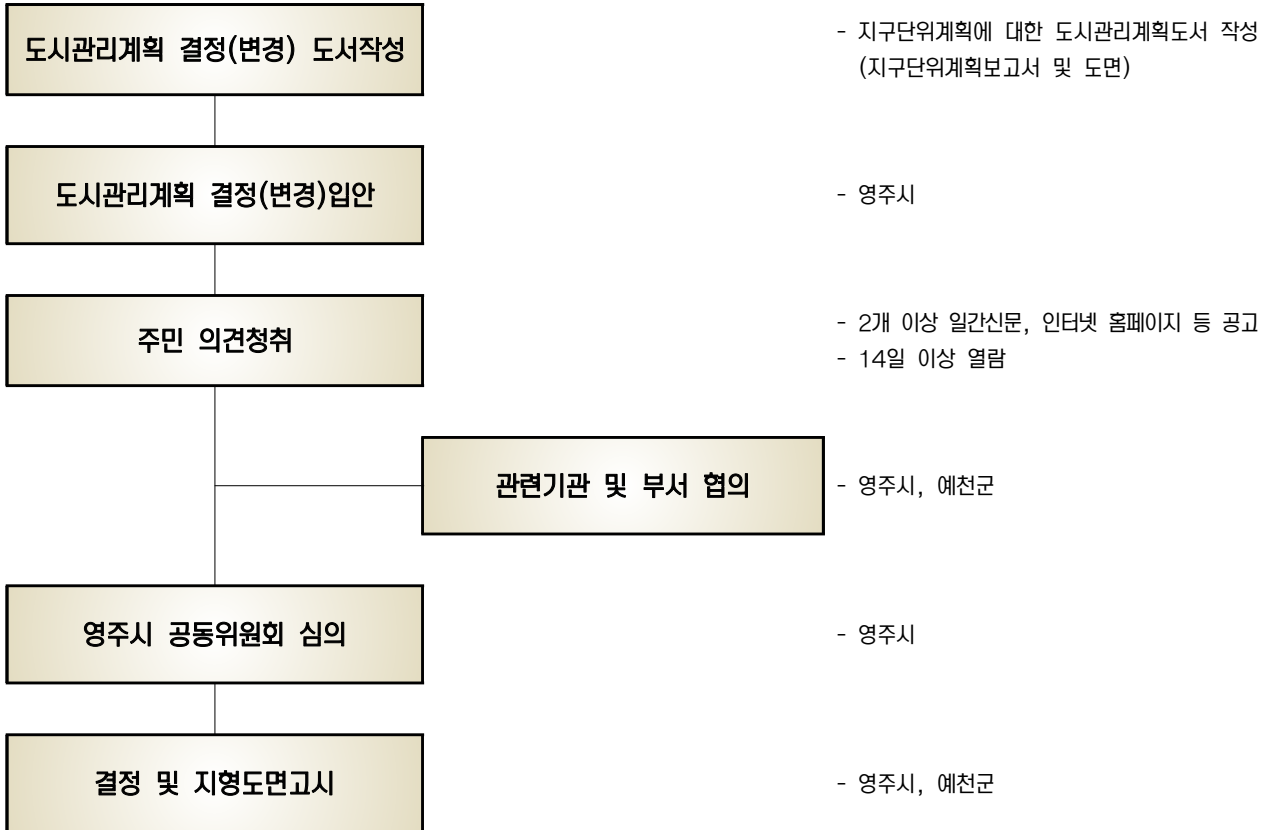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구분	법률 내용
법	제24조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1.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인접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한 경우
법	제28조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①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함

<표 계속>

구분	법률 내용
시행령	제22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②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전국 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도시·군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법	제29조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① 도시·군관리계획은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결정하고, 다음 각 호의 도시·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1.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법	제30조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 제시하여야 함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다만, 시·도지사가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이나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법	제50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법	제52조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은 이루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와 제4호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2 추진절차



Ⅲ. 토지이용계획

1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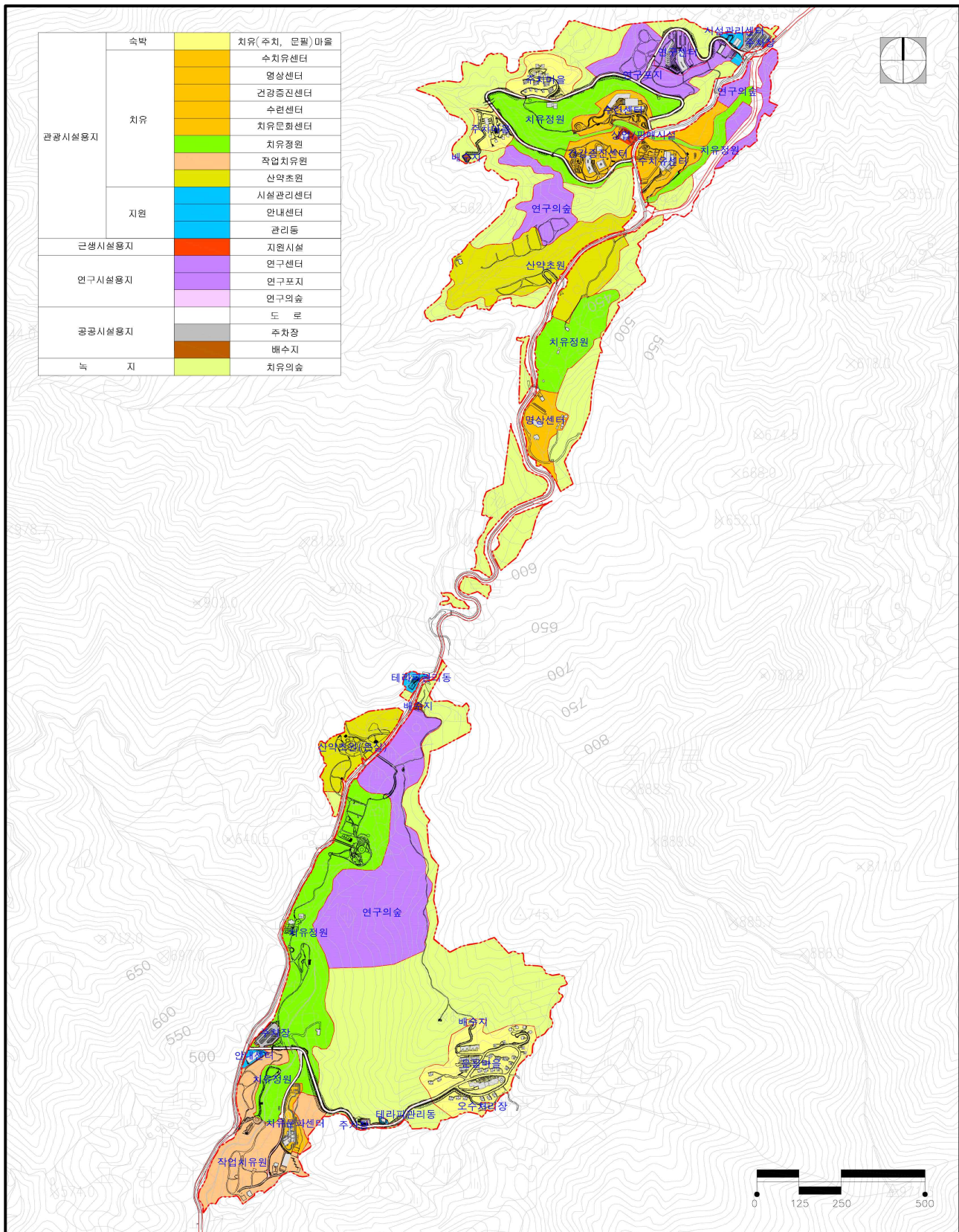
■ 용지별 토지이용계획

구분		부지면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국립 산림 치유원	소계	1,422,346.4	-	1,422,346.4	
	근린생활시설용지	1,990.5	-	1,990.5	
	연구시설용지	232,516.2	-	232,516.2	
	관광시설용지	623,763.4	-	623,763.4	
	공공시설용지	49,863.1	-	49,863.1	
	녹지	514,213.2	-	514,213.2	

■ 시설별 토지이용 계획

구분		부지면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합계		1,422,346.4	-	1,422,346.4		
근린생활시설 용지	지원시설	1,990.5	-	1,990.5	주치상업판매시설	
연구시설용지	소계	232,516.2	-	232,516.2		
	연구센터	12,060.0	-	12,060.0	건강증진지원센터-건강증진 지원센터 사무동, 숙소동	
	연구포지	35,303.2	-	35,303.2	-	
	연구의 숲	185,153.0	-	185,153.0	-	
관광시설용지	소계	623,763.4	-	623,763.4		
	숙박	치유마을	93,854.1	-	93,854.1	주치마을, 산림치유마을, 문벌마을
		계	521,261.7	-	521,261.7	
	치유	수치유센터	29,815.1	-	29,815.1	-
		명상센터	19,477.3	-	19,477.3	산림문화휴양관, 숲속의집 8개
		산약초원	121,933.2	-	121,933.2	산약초치유정원
		수련센터	18,545.0	-	18,545.0	산림치유동, 숙박치유동
		건강증진센터	19,812.0	-	19,812.0	건강증진센터-방문자안내센 터, 건강증진센터 사무동
		작업치유원	67,399.6	-	67,399.6	직원숙소, 창고
		치유정원	234,399.6	-	234,399.6	-
		치유문화센터	9,879.9	-	9,879.9	-
		지원	계	8,647.6	-	8,647.6
	시설관리센터		3,237.0	-	3,237.0	지원시설
	관리동		3,276.1	-	3,276.1	창고
	안내센터		2,134.5		2,134.5	-
	공공시설용지	소계	49,863.1	-	49,863.1	
도로		41,191.2	-	41,191.2	-	
주차장		7,913.0	-	7,913.0	주1(통합주차장), 주2	
공급처리시설		758.9	-	758.9	배1, 심1	
녹지	치유의 숲	514,213.2	-	514,213.2	-	

2 토지이용계획도



Ⅳ. 주요 변경내용

1 가구 및 획지별 변경내용

구분	변경내용		가구 및 획지번호	비고
관광시설용지	주치지구	■ 건강증진센터 내 카페, 소매점, 사무실 운영	지2	영주
		■ 옥녀봉 힐링센터 내 소매점, 요가·명상 프로그램 및 강사사무실 운영	지4	영주
		■ 가구 및 획지의 명칭 변경		
		■ 주치소통방 내 사무실 운영	지8-2	영주
		■ 지원시설(시설관리센터) 내 사무실 운영	지1	영주
	문필지구	■ 해당 용지를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해 건축물에 관한 계획 금회 신규 추가	지6, 지7, 지8-1, 지9, 지10-1, 지11	영주
		■ 치유문화센터 내 사무실 운영	지16	예천
		■ 상업/판매시설 내 순환운동실, 건강증진실, 카페·소매점 운영	숙3-6	예천
		■ 커뮤니티센터 내 비누제조·요가·명상 프로그램, 사무실 운영		
		■ 안내센터 내 요가·명상 프로그램 운영	지3	예천
	■ 해당 용지를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해 건축물에 관한 계획 금회 신규 추가	지14, 도4	예천	
연구시설용지	■ 건강증진지원센터 내 체력단련장 및 사무실 운영	연1	영주	
	■ 해당 용지를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해 건축물에 관한 계획 금회 신규 추가	연2, 연3-1, 연4~6	영주	
근린생활시설용지	■ 주치상업판매시설 내 요가·명상 프로그램 운영	상1	영주	
공공시설용지	■ 해당 용지를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해 건축물에 관한 계획 금회 신규 추가	주1, 주3, 도1~도3, 도5~도6	영주, 예천	
녹지시설용지	■ 녹지의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관리를 위해 금회 신규 추가	녹1~녹17	영주, 예천	

2 세부 변경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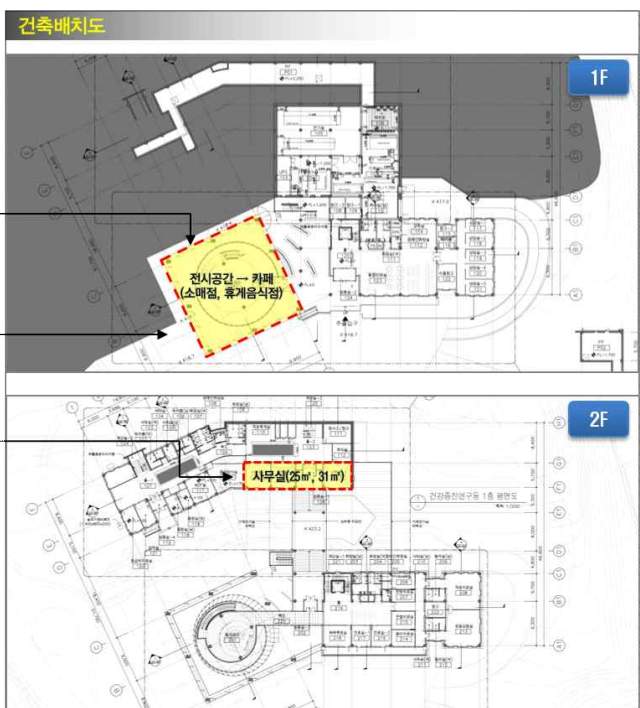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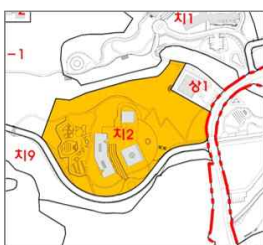
■ 치2 (건강증진센터 - 방문자안내센터, 사무동)

치2 (건강증진센터 - 방문자안내센터, 사무동)

- 건강증진센터 내 카페, 소매점, 사무실 운영
(3개 용도 추가)

구분	허용용도
치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라목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아목, 하목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목
	➢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마목
	➢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마목

■ 가구 및 획지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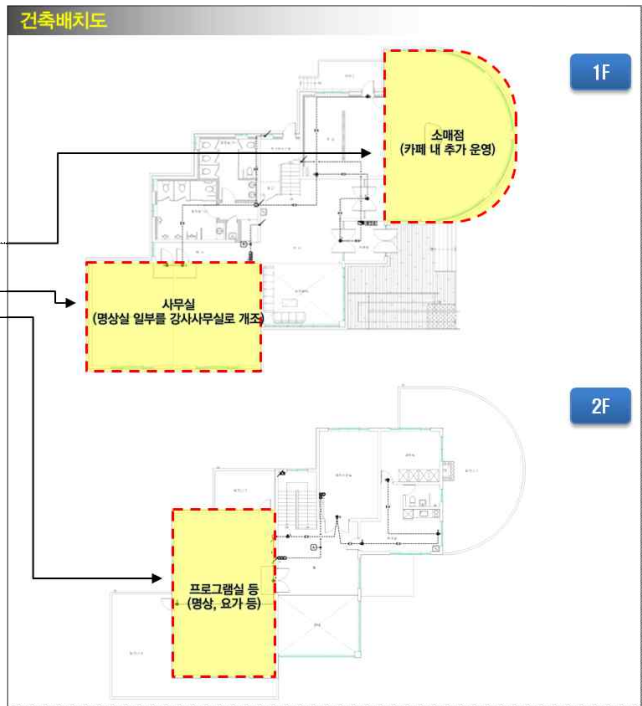
■ 치4 (산림문화휴양관 → 옥녀봉 힐링센터)

치4 (산림문화휴양관 → 옥녀봉 힐링센터)

- ▶ 옥녀봉 힐링센터 내 소매점, 요가·명상 프로그램 및 강사사무실 운영 (3개 용도 추가)
- ▶ 가구 및 획지 명칭변경(산림문화휴양관 → 옥녀봉 힐링센터)

구분	허용용도
치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사목, 자목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파목 ▶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가목 ▶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바목

■ 가구 및 획지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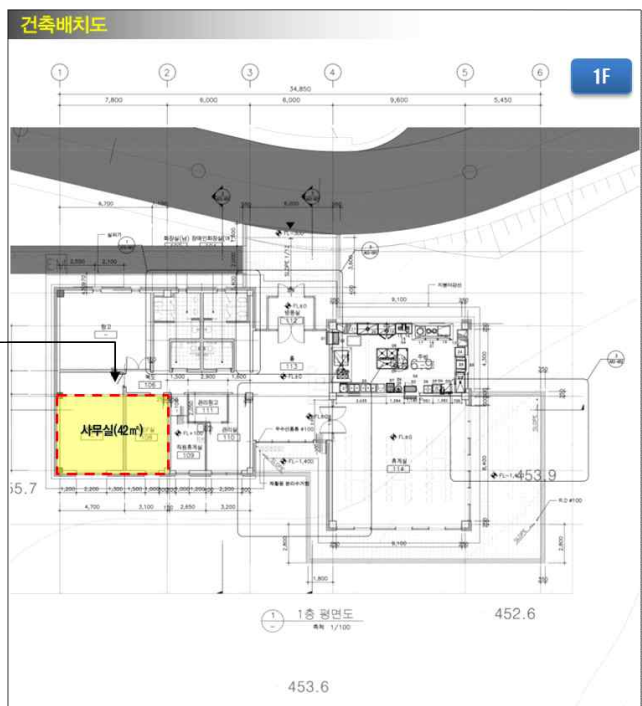
■ 치8-2 (주차소통방)

치8-2 (주차소통방)

- ▶ 주차소통방 내 사무실 운영 (1개 용도 추가)

구분	허용용도
치8-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사목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자목, 하목

■ 가구 및 획지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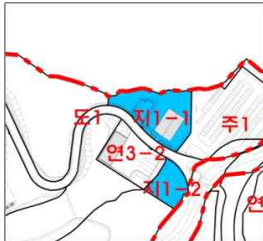
지1 (지원시설-시설관리센터)

지1 (지원시설-시설관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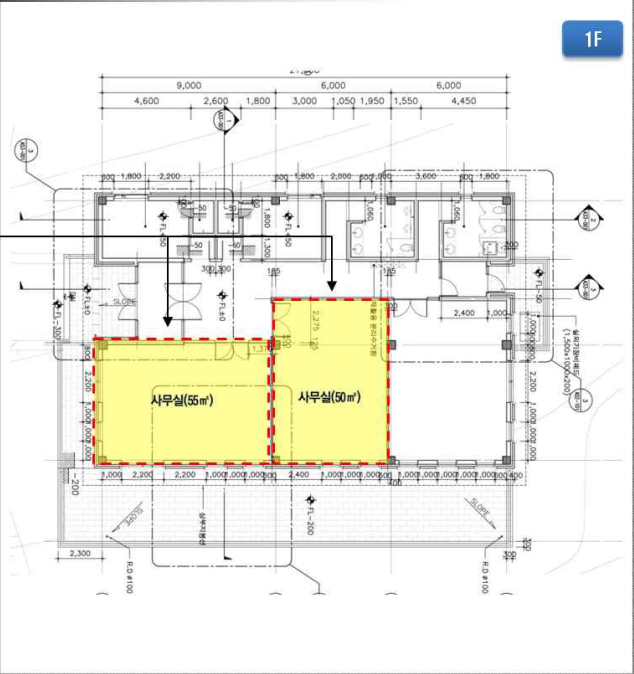
- 지원시설(시설관리센터) 내 사무실 운영
(건축법 시행령 개정 반영 : 제4호 바목→하목)

구분	허용용도
지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4호의 제2종근생활시설 중 바목, 하목 ➤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마목

가구 및 획지 배치도



건축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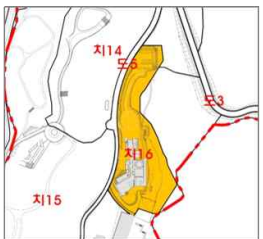
지16 (치유문화센터)

지16 (치유문화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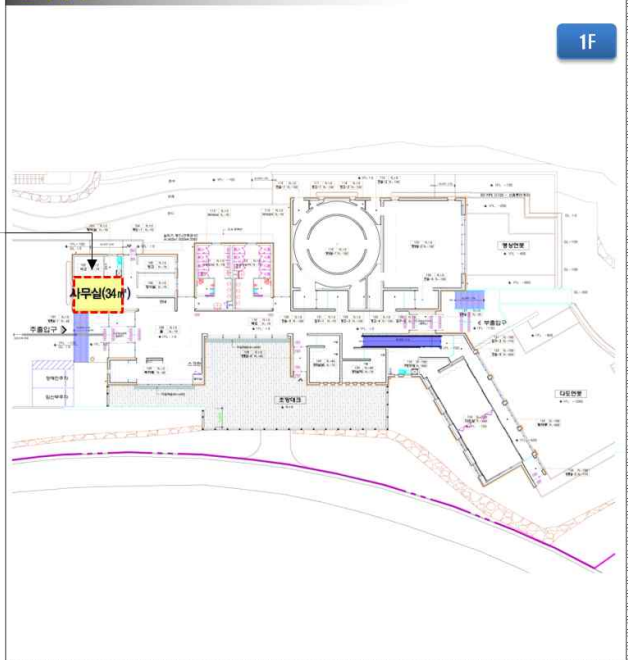
- 치유문화센터 내 사무실 운영
(1개 용도 추가)

구분	허용용도
지1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4호의 제2종근생활시설 중 하목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가구 및 획지 배치도



건축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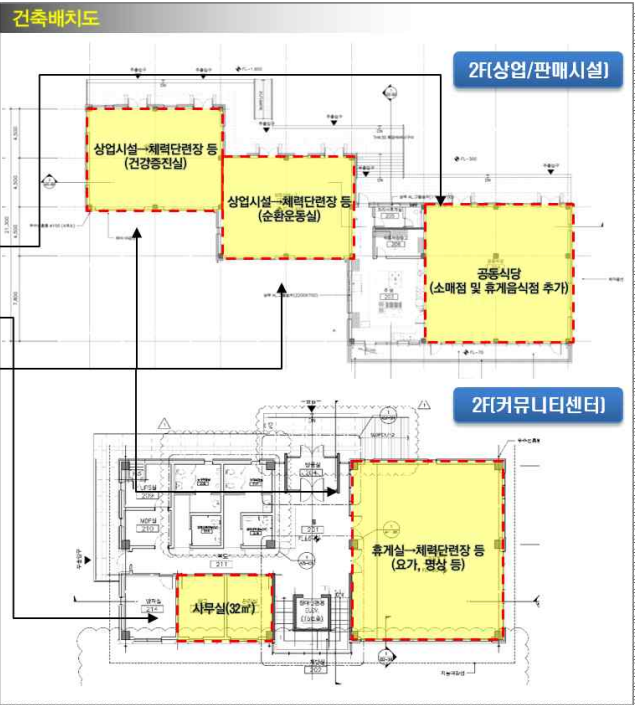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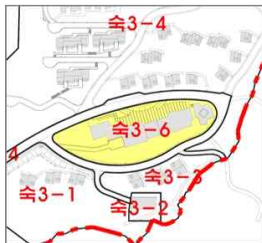
■ 숙3-6 (문필소통방)

숙3-6 (문필소통방)

- 상업/판매시설 내 순환운동실, 건강증진실, 카페 · 소매점 운영
- 커뮤니티센터 내 비누제조 · 요가 · 명상 프로그램, 사무실 운영

구분	허용용도
숙3-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사목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자목, 파목, 하목 ➢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바목

■ 가구 및 획지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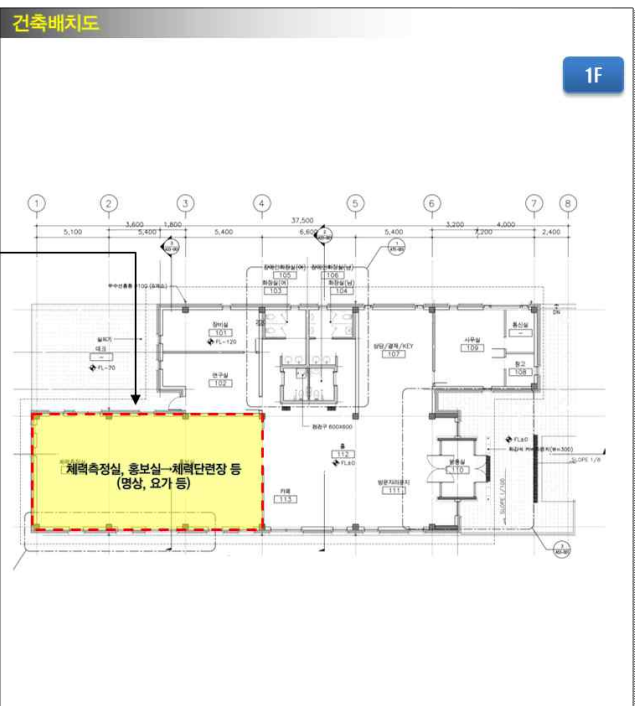
■ 지3 (안내센터)

지3 (안내센터)

- 안내센터 내 요가 · 명상 프로그램 운영 (1개 용도 추가)

구분	허용용도
지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파목, 하목 ➢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마목

■ 가구 및 획지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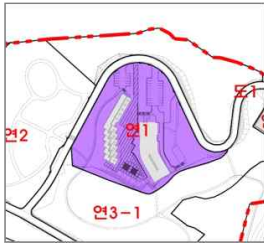
연1 (건강증진지원센터 - 사무동, 숙소동)

연1 (건강증진지원센터 - 사무동, 숙소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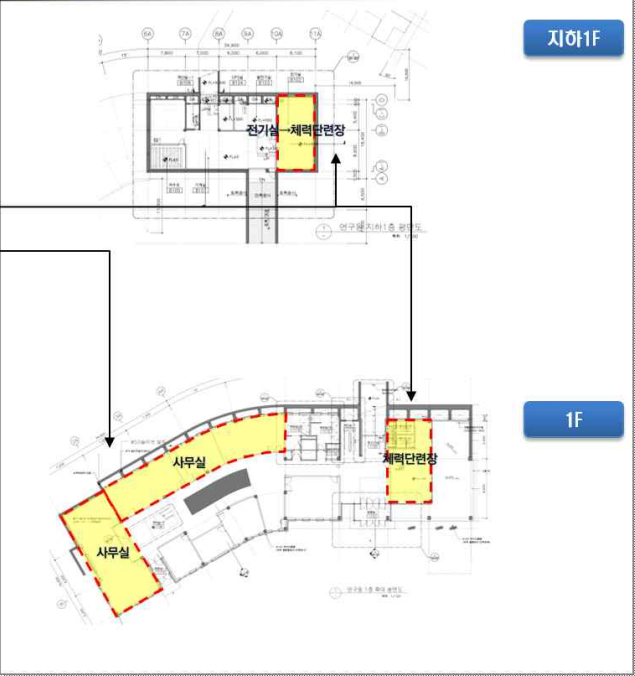
- 건강증진지원센터 내 체력단련장 및 사무실 운영
(2개 용도 추가)

구분	허용용도
지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파목, 하목 ➢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마목 ➢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바목

가구 및 획지 배치도



건축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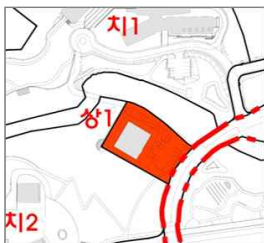
상1 (주치상업판매시설)

상1 (주치상업판매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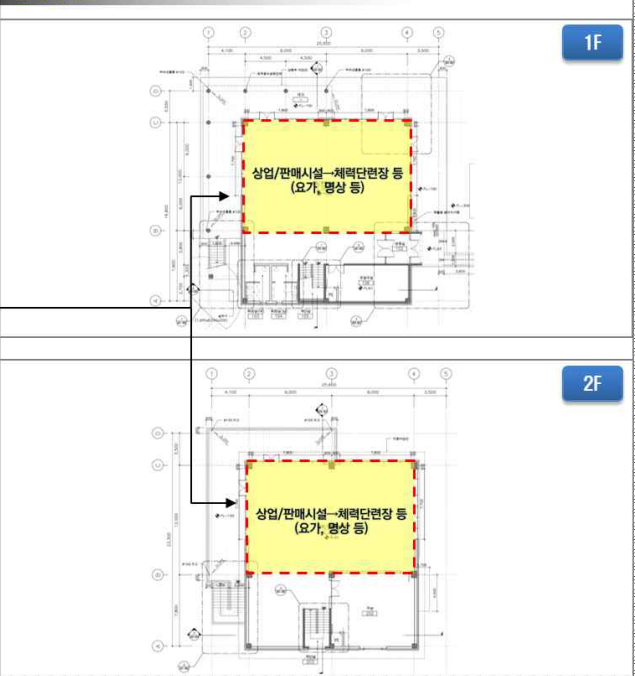
- 주치상업판매시설 내 요가·명상프로그램 운영
(1개 용도 추가)

구분	허용용도
지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자목, 파목

가구 및 획지 배치도



건축배치도



V.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 - 변경없음

■ 영주시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699,929.4	-	699,929.4	100.0	
계획관리지역	699,929.4	-	699,929.4	100.0	

■ 예천군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722,417.0	-	722,417.0	100.0	
계획관리지역	722,417.0	-	722,417.0	100.0	

2 용도지구 결정(변경) - 변경없음

구역명	구역의 세분	위치	면적(㎡)	비고
합계			1,422,346.4	
국립산림치유원	관광·휴양	경상북도 영주시 봉현면 산52임 일원	699,929.4	영주시
개발진흥지구		경상북도 예천군 상리면 산69임 일원	722,417.0	예천군

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 변경없음

구역명	구역의 세분	위치	면적(㎡)	비고
합계			1,422,346.4	
국립산림치유원	특정	경상북도 영주시 봉현면 일대	699,929.4	영주시
	지구단위계획구역	경상북도 예천군 상리면 일대	722,417.0	예천군

4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변경없음

- 교통시설(도로)

유별	합 계			1 류 (예천지역)			2 류 (영주지역)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1	5,851 (628)	18,282.2	-	-	-	1	5,851 (628)	18,282.2	-	-	-
소로	1	5,851 (628)	18,282.2	-	-	-	1	5,851 (628)	18,282.2	-	-	-

■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 변경

○ 관광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표시 번호	가구 번호	획 지						비 고
		번 호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계				623,763.4	-	623,763.4		
치유시설 소계				521,261.7	-	521,261.7		
치1	치1		영주시 봉현면 두산리 1325원 일원	18,545.0	-	18,545.0	수련센터	
치2	치2		영주시 봉현면 두산리 1330원 일원	19,812.0	-	19,812.0	건강증진센터	
치3	치3		영주시 봉현면 두산리 1355원 일원	20,870.3	-	20,870.3	수치유센터	
치4	치4		영주시 봉현면 두산리 1368원 일원	19,477.3	-	19,477.3	명상센터	
치5	치5	5	예천군 상리면 고향리 1316공 일원	30,404.5	-	30,404.5	산약초원	
치6	치6		영주시 봉현면 두산리 1354공 일원	8,944.8	-	8,944.8	수치유센터	
치7	치7		영주시 봉현면 두산리 1352임 일원	14,900.6	-	14,900.6	치유정원	
치8	치8	8-1	영주시 봉현면 두산리 1326공 일원	48,623.7	-	48,623.7	치유정원	
		8-2	영주시 봉현면 두산리 1327원 일원	2,106.6	-	2,106.6	커뮤니티센터	
치9	치9		영주시 봉현면 두산리 1337공 일원	8,781.4	-	8,781.4	치유정원	
치10	치10	10-1	영주시 봉현면 두산리 1339공 일원	66,056.3	-	66,056.3	산약초원	
		10-2	영주시 봉현면 두산리 1340대 일원	1,020.9	-	1,020.9	직원숙소	
치11	치11		영주시 봉현면 두산리 1362구 일원	24,451.5	-	24,451.5	산약초원	
치12	치12		영주시 봉현면두산리1364원 일원	36,980.0	-	36,980.0	치유정원	
치13	치13	13	예천군 상리면 고향리 1324원 일원	103,051.2	-	103,051.2	치유정원, 직원숙소	
치14	치14		예천군 상리면 고향리 1334원 일원	19,956.1	-	19,956.1	치유정원	
치15	치15	15	예천군 상리면 고향리 1331공 일원	67,399.6	-	67,399.6	직원숙소, 창고	
치16	치16		예천군 상리면 고향리 1337원 일원	9,879.9	-	9,879.9	치유문화센터	
숙박시설 소계				93,854.1	-	93,854.1		
숙1	숙1		영주시 봉현면 두산리 1311원 일원	20,448.6	-	20,448.6	단기치유	
숙2	숙2		영주시 봉현면 두산리 1333원 일원	11,902.5	-	11,902.5	단기치유	
숙3	숙3	3-1	예천군 상리면 고향리 1346원 일원	7,341.7	-	7,341.7	장기치유	
		3-2	예천군 상리면 고향리 1346원 일원	635.1	-	635.1	오수처리장	
		3-3	예천군 상리면 고향리 1346원 일원	2,489.5	-	2,489.5	장기치유	
		3-4	예천군 상리면 고향리 1343원 일원	41,895.3	-	41,895.3	장기치유	
		3-5	예천군 상리면 고향리 1343원 일원	507.4	-	507.4	배수지	
		3-6	예천군 상리면 고향리 1345원 일원	5,100.3	-	5,100.3	커뮤니티센터	
도4	도4		예천군 상리면 고향리 1344도 일원	3,533.7	-	3,533.7	단지내도로	

<표 계속>

도면 표시 번호	가구 번호	획 지					비 고
		번 호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지원시설 소계				8,647.6	-	8,647.6	
지1	지1	1-1	영주시 봉현면두산리1314대 일원	2,347.7	-	2,347.7	시설관리센터
		1-2	영주시 봉현면두산리1319공 일원	889.3	-	889.3	시설관리센터
지2	지2		예천군 상리면 고향리1314원 일원	2,747.4	-	2,747.4	직원숙소
지3	지3		예천군 상리면 고향리1330대 일원	2,134.5	-	2,134.5	안내센터
지4	지4		예천군 상리면 고향리 1342대 일원	528.7	-	528.7	직원숙소

○ 연구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표시 번호	가구 번호	획 지					비 고
		번 호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232,516.2	-	232,516.2	
연1	연1		영주시 봉현면 두산리 1323대 일원	12,060.0	-	12,060.0	연구센터
연2	연2		영주시 봉현면 두산리 1312공 일원	18,788.6	-	18,788.6	연구포지
연3	연3	3-1	영주시 봉현면두산리1322공 일원	14,745.9	-	14,745.9	연구포지
		3-2	영주시 봉현면 두산리 1320대 일원	1,768.7	-	1,768.7	장비관리동
연4	연4	4-1	영주시 봉현면 두산리 1346임 일원	5,259.3	-	5,259.3	연구의숲
		4-2	영주시 봉현면 두산리 1351임 일원	4,371.8	-	4,371.8	
		4-3	영주시 봉현면 두산리 1347임 일원	11,251.2	-	11,251.2	
연5	연5		영주시 봉현면 두산리 1336공 일원	28,878.8	-	28,878.8	연구의숲
연6	연6		예천군 상리면 고향리1323임 일원	135,391.9	-	135,391.9	연구의숲

○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표시 번호	가구 번호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1,990.5	-	1,990.5	
상1	상1	영주시 봉현면두산리1329대 일원	1,990.5	-	1,990.5	근생시설

○ 공공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표시 번호	가구 번호	획 지					비 고
		번 호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계				31,580.9	-	31,580.9	
주1	주1		영주시 봉현면 두산리 1315차 일원	4,104.4	-	4,104.4	주차장
주2	주2		예천군 상리면 고향리 1328차 일원	3,469.5	-	3,469.5	
주3	주3		예천군 상리면 고향리 1341차 일원	339.1	-	339.1	
도1	도1		영주시 봉현면 두산리 1318도 일원	4,440.1	-	4,440.1	도로
도2	도2	2-1	영주시 봉현면 두산리 1324도 일원	10,324.3	-	10,324.3	
도3	도3		예천군 상리면 고향리 1329도 일원	5,442.5	-	5,442.5	도로
도5	도5		예천군 상리면 고향리 1335도 일원	2,526.2	-	2,526.2	
도6	도6		영주시 봉현면 두산리 1374도 일원	175.9	-	175.9	
배1	배1		영주시 봉현면 두산리 1335수 일원	252.3	-	252.3	배수지
심1	심1		예천군 상리면 고향리 1322임 일원	506.6	-	506.6	관개용수배수지

○ 녹지시설용지(신규)

도면 표시 번호	가구 번호	획 지					비 고
		번 호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514,213.2	514,213.2	
녹1	녹1		영주시 봉현면 두산리 1317공 일원	-	1,146.3	1,146.3	
녹2	녹2		영주시 봉현면 두산리 1313공 일원	-	8,851.4	8,851.4	
녹3	녹3		영주시 봉현면 두산리 1310임 일원	-	80,310.5	80,310.5	
녹4	녹4		영주시 봉현면 두산리 1321임 일원	-	13,161.8	13,161.8	
녹5	녹5		영주시 봉현면 두산리 1338임 일원	-	21,461.7	21,461.7	
녹6	녹6		영주시 봉현면 두산리 1358임 일원	-	6,329.2	6,329.2	
녹7	녹7		영주시 봉현면 두산리 1345임 일원	-	11,716.4	11,716.4	
녹8	녹8		영주시 봉현면 두산리 1367임 일원	-	45,901.9	45,901.9	
녹9	녹9		영주시 봉현면 두산리 1375임 일원	-	4,357.5	4,357.5	
녹10	녹10		영주시 봉현면 두산리 1376임 일원	-	25,844.3	25,844.3	
녹11	녹11		영주시 봉현면 두산리 1381임 일원	-	12,733.0	12,733.0	
녹12	녹12		영주시 봉현면 두산리 1382임 일원	-	3,569.6	3,569.6	
녹13	녹13		영주시 봉현면 두산리 1383임 일원	-	1,945.7	1,945.7	
녹14	녹14		예천군 효자면 고향리 1315임 일원	-	748.1	748.1	
녹15	녹15		예천군 효자면 고향리 1319임 일원	-	2,260.0	2,260.0	
녹16	녹16		예천군 효자면 고향리 1322임 일원	-	265,033.0	265,033.0	
녹17	녹17		예천군 효자면 고향리 1347임 일원	-	8,842.8	8,842.8	

■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 변경

○ 관광시설용지 (변경)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불허 용도	
			허 용 용 도			
지1 ~ 지5 지8 지10 지12 지13	지1 ~ 지5 지8 지10 지12 지13	용 도	지1 (산림치유동, 숙박치유동)	「건축법 시행령」별표1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자목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바목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나목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지2 (건강증진센터 - 방문자안내센터, 건강증진센터 사무동)	기정		「건축법 시행령」별표1 □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라목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마목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목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마목
				변경		「건축법 시행령」별표1 □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라목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마목 ·제4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아목, 하목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마목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목 □
			지3 (수치유센터)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나목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바목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가목
			지4 (산림문화휴양관, 숲속의 집 8개동)	기정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나목, 사목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바목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가목
			지4 (옥녀봉 힐링센터, 숲속의 집 8개동)	변경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사목, 자목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가목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바목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파목
			지5 (산악초치유정원)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아목
			지8-2 (주지소통방)	기정		「건축법 시행령」별표1 □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사목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자목
				변경		「건축법 시행령」별표1 □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사목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자목, 하목
			지10-2 (산림복지지원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직원숙소)
			지12 (취사장, 화장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바목
			지13 (산림체험장, 산림복지지원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직원숙소),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마목 ·제5호의 문화및집회시설 중 라목
			지15-3 (휴게소)			「건축법 시행령」별표1 □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마목
			지15 (직원숙소, 창고)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직원숙소)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바목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가목
			지16 (치유문화센터)	기정		「건축법 시행령」별표1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변경		「건축법 시행령」별표1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하목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표 계속>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허 용 용 도	불허 용도
숙1 ~ 숙3	숙1 ~ 숙3	용 도	숙1 (주치마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바목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숙2 (산림치유마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바목	
			숙3-1, 숙3-3, 숙3-4 (문필마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바목	
			숙3-2 (오수처리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중 가목	
			숙3-5 (배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아목	
숙3	숙3	용 도	숙3-6 (문필소통방)	기정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사목 ·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바목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자목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변경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사목 ·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바목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자목, 파목, 하목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허 용 용 도	불허 용도
지1 ~ 지4	지1 ~ 지4	용 도	지1 (지원시설)	기정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마목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변경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하목 ·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마목	
			지3 (안내센터)	기정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하목 ·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마목 · 제5호의 문화및집회시설 중 라목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변경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파목, 하목 ·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마목 · 제5호의 문화및집회시설 중 라목	
			지2, 지4 (창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1호의 단독주택(직원숙소) ·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바목, ·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가목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허 용 용 도	불허 용도
지6	지6	용 도	지6 (수치유센터)	기정 -	-
지7	지7			변경 · 치유와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 수변데크, 노천욕장 등 친수공간 및 수계와 연 계된 옥외 수치료 시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지8	지8		지7, 지8-1, 지9, 지14 (치유정원)	기정 -	-
지9	지9			변경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바목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지10	지10		지10-1, 지11 (산악초원)	기정 -	-
지11	지11			변경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아목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지14	지14		도4	기정 -	-
도4	도4			변경 · 가구 및 획지 진입도로(차도, 인도), 도로교통시설 및 기반시설(상·하수도, 전 기 등)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연구시설용지 (변경)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허 용 용 도	불허 용도
연1 연3	연1 연3	용도	연1 (건강증진지원센터 - 사무동, 숙소동)	기정 「건축법 시행령」별표1 □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마목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바목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연1 (건강증진지원센터 - 사무동, 숙소동)	변경 「건축법 시행령」별표1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파목, 하목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바목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중 마목	
			연3-2 (주차장비관리동)	「건축법 시행령」별표1 □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가목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허 용 용 도	불허 용도
연2 ~ 연6	연2 ~ 연6	용도	연2, 연3-1 (연구포지)	기정 -	-
			연2, 연3-1 (연구포지)	변경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아목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연4, 연5, 연6 (연구의숲)	기정 -	-
			연4, 연5, 연6 (연구의숲)	변경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아목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허 용 용 도	불허 용도
상1	상1	용도	상1 (주치상업 판매시설)	기정 「건축법 시행령」별표1 □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자목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상1 (주치상업 판매시설)	변경 「건축법 시행령」별표1 □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자목, 파목	

○ 공공시설용지 (변경)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허 용 용 도	불허 용도
주2 배1 배2	주2 배1 배2	용도	주2	「건축법 시행령」별표1 □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가목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배1	「건축법 시행령」별표1 □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아목	
			심1	「건축법 시행령」별표1 □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아목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허 용 용 도	불허 용도
주1 주3 도1 도2 도3 도5 도6	주1 주3 도1 도2 도3 도5 도6	용도	주1, 주3	기정	-	-
				변경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가목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도1~도3, 도5~도6	기정	-	-
				변경	·가구 및 획지 진입도로(차도, 인도), 도로교통시설 및 기반시설(상·하수도, 전 기 등)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녹지시설용지 (변경)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허 용 용 도	불허 용도
녹1 ~ 녹17	녹1 ~ 녹17	용도	녹1~녹17	기정	-	-
				변경	·원형녹지 및 사면안정화를 위한 시설, 조경식재 및 잔디, 임도 및 그에 부수되 는 시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공통사항 (변경)

건 폐 율	40%	형태	공통 : 경사형지붕 권장	녹지 : -
용 적 률	100%	색채	공통 : 자연재료에 가까 운 색을 권장	녹지 : -
높 이	공통 : 4층 이하 녹지 : -			
배치	도면참조	건 축 선	-	

■ 변경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서
가구 및 획지계획	녹1~녹17	·금회 신규 추가	·녹지의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관리를 위해 금회 신규 추가
건축물 계획	관광시설 용지	치2 ·건축물 용도 추가 -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아목, 하목	·건강증진센터 내 카페, 소매점, 사무실 운영에 따른 건 축물 용도 추가
		치4 ·건축물 명칭 변경 - 산림문화휴양관 → 옥녀봉 힐링센터 ·건축물 용도 추가 -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자목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파목	·옥녀봉 힐링센터 내 소매점, 요가·영상 프로그램 및 강사사무실 운영에 따른 건축물 용도 추가
		치6 ·금회 신규 추가	·해당 용지를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해 건축물에 관한 계획 금회 신규 추가
		치7 ·금회 신규 추가	·해당 용지를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해 건축물에 관한 계획 금회 신규 추가
		치8-1 ·금회 신규 추가	·해당 용지를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해 건축물에 관한 계획 금회 신규 추가
		치8-2 ·건축물 용도 추가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하목	·주치소통방 내 사무실 운영에 따른 건축물 용도 추가

<표 계속>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서
건축물 계획	관광시설 용지	치9 ·금회 신규 추가	·해당 용지를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해 건축물에 관한 계획 금회 신규 추가
		치10-1 ·금회 신규 추가	·해당 용지를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해 건축물에 관한 계획 금회 신규 추가
		치11 ·금회 신규 추가	·해당 용지를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해 건축물에 관한 계획 금회 신규 추가
		치14 ·금회 신규 추가	·해당 용지를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해 건축물에 관한 계획 금회 신규 추가
		치16 ·건축물 용도 추가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하목	·치유문화센터 내 사무실 운영에 따른 건축물 용도 추가
		숙3-6 ·건축물 용도 추가 -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파목, 하목	·상업/판매시설 내 순환운동실, 건강증진실, 카페·소매점 운영에 따른 건축물 용도 추가 ·커뮤니티센터 내 비누제조·요가·명상 프로그램, 사무실 운영에 따른 건축물 용도 추가
		지1 ·건축물 용도 변경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 하목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건축물 용도 변경
		지3 ·건축물 용도 추가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파목	·안내센터 내 요가·명상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건축물 용도 추가
		도4 ·금회 신규 추가	·해당 용지를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해 건축물에 관한 계획 금회 신규 추가
	연구시설 용지	연1 ·건축물 용도 추가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파목, 하목	·건강증진지원센터 내 체력단련장 및 사무실 운영에 따른 건축물 용도 추가
		연2 ·금회 신규 추가	·해당 용지를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해 건축물에 관한 계획 금회 신규 추가
		연3-1 ·금회 신규 추가	·해당 용지를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해 건축물에 관한 계획 금회 신규 추가
		연4 ·금회 신규 추가	·해당 용지를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해 건축물에 관한 계획 금회 신규 추가
		연5 ·금회 신규 추가	·해당 용지를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해 건축물에 관한 계획 금회 신규 추가
		연6 ·금회 신규 추가	·해당 용지를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해 건축물에 관한 계획 금회 신규 추가
	근린생활 시설용지	상1 ·건축물 용도 추가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파목	·주치상업판매시설 내 요가·명상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건축물 용도 추가
	공공시설 용지	주1 ·금회 신규 추가	·해당 용지를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해 건축물에 관한 계획 금회 신규 추가
		주3 ·금회 신규 추가	·해당 용지를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해 건축물에 관한 계획 금회 신규 추가
		도1 ·금회 신규 추가	·해당 용지를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해 건축물에 관한 계획 금회 신규 추가
		도2 ·금회 신규 추가	·해당 용지를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해 건축물에 관한 계획 금회 신규 추가
		도3 ·금회 신규 추가	·해당 용지를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해 건축물에 관한 계획 금회 신규 추가
		도5 ·금회 신규 추가	·해당 용지를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해 건축물에 관한 계획 금회 신규 추가
		도6 ·금회 신규 추가	·해당 용지를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해 건축물에 관한 계획 금회 신규 추가

5 가구 및 획지,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도

